

모태펀드 (교육부) 2026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6년도 모태펀드(교육부)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요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 총 75억 원 이내	
투자 조건 및 투자방법	· 증권시장(코넥스 시장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중소기업(국외창업기업 포함, 이하 동일) 등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을 적용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	법적 근거
벤처투자조합*	기술지주회사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단, 과학기술원에서 만든 기술지주회사 성격의 전문회사만 해당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단, 과학기술원에서 만든 기술지주회사 성격의 전문회사만 해당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인력,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 마감 시한	2026년 5월 6일(수), 14:00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	
조합 결성 시한	· 결성시한 : 3개월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창업기획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공동운용(Co-GP)인 경우만 지원 가능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계정	분야	신청자격 ^{주1)}	출자계획			
			출자예산	선정 조합수	최소결성 예정금액	자조합별 출자액
교육계정	대학창업(1유형)	신규 운용사 ^{주2)}	15	1개	20	15
	대학창업(2유형) ^{주3)}	기존 운용사 ^{주4)}	60	3개	80	20
합계			75	4개	100	-

주1) 신규·기존 운용사의 구분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만 해당되며 창업기획자는 신규 운용사 판단기준에서 제외함(ex. 신규 창업기획자-기존 기술지주회사 Co-GP 펀드는 1유형으로 신청 불가, 기존 창업기획자-신규 기술지주회사 Co-GP 펀드는 2유형으로 신청 불가)

주2) 2017~2025년도 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운용사
2017~2025년도 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가 신규 운용사와 공동운용(Co-GP) 하는 경우 신규 운용사 자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자펀드 부족 시 2유형으로 선정 가능

주3) 대학창업(2유형) 분야의 경우 자조합별 결성목표액은 26.7억원

주4) 2017~2025년도 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조합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 Co-GP의 경우 신청 운용사 모두 해당분야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교육계정	대학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되, 대학창업기업*에 투자총액(약정총액의 80%)의 75% 이상 투자. 단, 학생 창업 기업**에 투자총액의 50% 이상 투자 * 대학창업기업은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초 투자 당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5년 이내 졸업자 포함) 또는 대학교 교직원인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창업 후 6개월 미만 기업의 경우 창업시점부터 등기)되어 있고, 해당 임원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이하 "창업기업") ② 최초 투자 당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 대학창업기업 중 ① 유형 기업. 단, 해당 임원이 대학교 교직원인 경우는 제외

4.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모태펀드 출자비율	○ 75% 이내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10% 이상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 운용사 관련 기관 출자금 합산. 단, GP는 약정총액의 3% 이상 출자하며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																											
자조합의 투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일정비율'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 의무비율(예시: 80%) ○ 다만, 모태펀드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실제 결성 금액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관련 법령상 투자 의무는 전체 규모에 적용) ○ 운용사는 제안서 제출 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투자계획을 2년 연속 미달성한 조합의 운용사에 대해서는 2년차 미달성 연도를 기준으로 차년도 출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또한 연차별 투자 의무 비율 달성 여부에 따라 관리보수를 차등 지급함. <p style="text-align: center;"><연차별 최소 투자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투자기간</th> <th>등록일로부터 만 1년</th> <th>등록일로부터 만 2년</th> <th>등록일로부터 만 3년</th> <th>등록일로부터 만 4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약정총액 대비 비율</td> <td>4년</td> <td>20%</td> <td>40%</td> <td>60%</td> <td>80%</td> </tr> <tr> <td>3년</td> <td>27%</td> <td>54%</td> <td>80%</td> <td>-</td> </tr> <tr> <td>2년</td> <td>40%</td> <td>80%</td> <td>-</td> <td>-</td> </tr> <tr> <td>1년</td> <td>8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연차별 최소 투자비율(출자약정총액 대비)이상으로 조합이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제안서 참조)</p>	구분	투자기간	등록일로부터 만 1년	등록일로부터 만 2년	등록일로부터 만 3년	등록일로부터 만 4년	약정총액 대비 비율	4년	20%	40%	60%	80%	3년	27%	54%	80%	-	2년	40%	80%	-	-	1년	80%	-	-	-
구분	투자기간	등록일로부터 만 1년	등록일로부터 만 2년	등록일로부터 만 3년	등록일로부터 만 4년																							
약정총액 대비 비율	4년	20%	40%	60%	80%																							
	3년	27%	54%	80%	-																							
	2년	40%	80%	-	-																							
	1년	80%	-	-	-																							
출자금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투자기간	○ 4년 이내 운용사 자율제안																											
존속기간	○ 10년 이내 운용사 자율제안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보수 지급기준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 및 연차별 투자 의무 비율 달성 여부에 따른 적용요율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출자약정액 규모</th> <th>연차별 투자 의무 달성</th> <th>연차별 투자 의무 미달성</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 이하</td> <td>2.5% 이하</td> <td>2.3% 이하</td> </tr> <tr> <td>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td> <td>2.3% 이하</td> <td>2.1% 이하</td> </tr> <tr> <td>600억원 초과</td> <td>2.1% 이하</td> <td>1.9% 이하</td> </tr> </tbody> </table>	출자약정액 규모	연차별 투자 의무 달성	연차별 투자 의무 미달성	300억원 이하	2.5% 이하	2.3% 이하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2.3% 이하	2.1% 이하	600억원 초과	2.1% 이하	1.9% 이하															
출자약정액 규모	연차별 투자 의무 달성	연차별 투자 의무 미달성																										
300억원 이하	2.5% 이하	2.3% 이하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2.3% 이하	2.1% 이하																										
600억원 초과	2.1% 이하	1.9% 이하																										

기준수익률	○ 기준수익률 3%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	<p>○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 가능,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가능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395 725 1417 1043"> <thead> <tr> <th rowspan="2">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th> <th colspan="2">조정 전</th> <th rowspan="2">조정</th> <th colspan="2">조정 후</th> </tr> <tr> <th>관리 보수율</th> <th>성과 보수율</th> <th>관리 보수율</th> <th>성과 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td> <td>2.5%</td> <td>20%</td> <td>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td> <td>2.3%</td> <td>24%</td> </tr> <tr> <td>500억원</td> <td>2.3%</td> <td>20%</td> <td>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td> <td>2.0%</td> <td>26%</td> </tr> </tbody> </table>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수탁회사	<p>○ 한국벤처투자자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을 관리하여야 함</p> <p>○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상품에 운용 가능</p> <p>○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p>																						
사무수탁회사	<p>○ 한국벤처투자자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 의무화</p> <p>○ 단, 사무수탁회사에 관한 제반비용은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p>																						
회계감사인	○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 감사인을 선정																						
전자보고시스템	○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등 사용 의무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 의사결정 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 외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투자 의사결정기구(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외부전문가</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td><td>벤처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td><td>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6</td><td>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7</td><td>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8</td><td>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9</td><td>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0</td><td>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1</td><td>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2</td><td>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를 소지한 자</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3</td><td>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별 업무집행조합원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의사결정기구 구성 가능 ○ 투자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간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투자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역할(참관인 또는 의결권자)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 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직원은 외부전문가로 참석이 불가함 	외부전문가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2	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	5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7	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8	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	9	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외부전문가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2	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																											
	5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7	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8	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																											
	9	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p style="text-align: center;">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부재원 활용 펀드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으며, 세부 내용은 사전 협의 요망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 ○ 개별조합 내 관리보수, 성과보수 요율 및 기준수익률은 단일요율을 적용 ○ 기술지주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사무수탁회사의 가치 평가보고서 제출 필수(단, 외부투자기관과 공동 투자시에는 면제) ○ 자회사 투자 등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후행투자 누적 투자 한도는 약정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 ○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약정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함 ○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의 경우 정관상 사업목적에 다음 i), ii)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ii)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 정관에 사업목적이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미반영시 반드시 서면으로 불가피성을 소명한 후, 조합 결성일 전까지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5. 인센티브

항 목	내 용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p>○ 운용사는 아래의 민간출자자* 인센티브(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아래의 민간출자자 제외대상은 해당 인센티브 부여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주목적 투자대상을 부여한 유한책임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 정부·지자체 및 그 자금을 활용하여 출자사업을 영위하는 곳 - 정책자금 출자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 style="width: 15%;">구분</th> <th>적용조건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①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단, 수익률이 기준수익률 7%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p>*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② 콜옵션 </td> <td> <p>민간출자자가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가격 = 원금 x (1 + 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2.0%)^{경과기간} · 행사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 행사한도 :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의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한도로 함 * 전체 민간출자자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 · 배분원칙 : 콜옵션 행사 통지 이전까지 회수 완료된 투자자산은 기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원금과 손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용사 제안 후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div> </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조건 및 내용	①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단, 수익률이 기준수익률 7%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p>*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p>	② 콜옵션	<p>민간출자자가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가격 = 원금 x (1 + 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2.0%)^{경과기간} · 행사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 행사한도 :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의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한도로 함 * 전체 민간출자자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 · 배분원칙 : 콜옵션 행사 통지 이전까지 회수 완료된 투자자산은 기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원금과 손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용사 제안 후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div>
	구분	적용조건 및 내용					
①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단, 수익률이 기준수익률 7%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p>*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p>						
② 콜옵션	<p>민간출자자가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가격 = 원금 x (1 + 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2.0%)^{경과기간} · 행사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 행사한도 :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의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한도로 함 * 전체 민간출자자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 · 배분원칙 : 콜옵션 행사 통지 이전까지 회수 완료된 투자자산은 기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원금과 손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용사 제안 후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div>						
<p>※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협의 시 결정</p>							

업무집행
조합원
인센티브

- 운용사는 다음의 별도의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중복신청 가능
-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령할 별도 인센티브는 모태펀드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수령할 초과수익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는 조합의 최종 결산 시 또는 청산 시에 지급

구분	적용조건	추가 성과보수율
학생창업기업투자 추가 성과보수	① 학생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한 경우 ② 학생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대학창업기업투자 추가 성과보수	① 대학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고용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지방투자	지방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

6. 기타사항

- 대학창업(1유형) 및 대학창업(2유형) 동시지원 불가
 - '17~'25년 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가 신규 운용사와 공동 운용하는 경우 신규 운용자 자격으로 간주하여, 대학창업(1유형)만 신청 가능
- 기 결성·운용중인 펀드의 추가 증액으로 결성하는 방식(Multi-Closing)으로 신청 불가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규 운용 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채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의 인력 구성은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모든 출자대상은 소관법령 및 기준규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의 방법, 투자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투자의무비율을 달리 정하는 조합으로 동법 및 시행령에 따른 투자의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 '4. 주요출자조건'의 성과보수와 '5. 인센티브'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이 수령할 성과보수와 인센티브의 총계는 모태펀드 초과수익의 50%를 한도로 함
-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 또는 청산시에 지급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순번	가점 항목
1	모태펀드 최대출자비율(75%)보다 하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중점 우대 * 하향 제안 출자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5%p 이상, 10%p 이상, 15%p 이상 구간 차등) ** 출자비율 55%를 가점 부여 상한으로 설정(출자비율 55% 미만도 제안 가능)
2	투자기간을 단축(1년 단위 / 최대 2년)하여 제안하는 경우 * 해당 가점 선택 시, 출자신청서 상 단축하는 투자기간으로 제안하여야 함
3	주목적(학생창업기업, 대학창업기업) 투자비율 증대방안 제시(투자비율에 따라 차등우대)
4	지방소재(서울.인천.경기 외) 기업 투자비율 제시(투자비율에 따라 차등우대)
5	기술지주회사 간 공동운영(Co-GP), 기술지주회사와 창업기획자 간 공동운영(Co-GP) 또는 타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출자자(LP)로 참여
6	본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운용 인력이 상주하는 운용사인 경우
7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성하는 경우

※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2), 3), 4) 항목은 규약에 반영함

※ 가점을 신청하여 우대를 받고 해당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사항이 적용됨(세부내용 3. 제재사항 참고)

2. 심의대상 제외 · 선정 배제 · 선정 보류 · 선정 취소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1) 심의대상 제외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심의대상 제외 가능
 - 가. 제안서 양식에 위배되는 제안서
 - 나. 소관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서
 -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지원분야의 오입력 포함)
 - 라.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조합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 조건이 미비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 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 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⑤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단,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 ⑥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라.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마. 운용인력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상태로 등록이 말소된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 (단,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등록 말소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등록이 취소된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 (단,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사람 (단,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벤처캐피탈 등*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면직 또는 해임된 임직원(단,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운용 가능한 법인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2025년 12월 말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 ①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하고 날인한 재무제표(가결산 재무제표도 인정). 단,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검토(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 ②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배제 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단, 재무제표 기준일이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인 경우만 가능)

** 재무제표 미제출 시 심의대상 제외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심의위원회(구.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 포함)'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자조합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단, 질병, 출산, 정년 등으로 인한 퇴직은 예외

라.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신규 운용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마.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자격으로 출자 신청한 경우 제외

바.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운용사가 신청한 유형이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유형의 등록된 전문인력이어야 함. 그 외 운용사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경력^{주1)} 또는 기타 투자경력^{주2)} 1년 이상인 자로 상근하는 운용 전담인력이어야 함

주1)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및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TIPS운용사,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경력

주2)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의 투자업무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

펀드 규모	최소기준 인원
300억원 이하	2명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3명
800억원 초과	4명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1 참고

- 사.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아.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3) 선정 보류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4) 선정 취소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출자심의회에서 조합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운용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검직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검직 상태 : 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등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사. 신규 운용 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후 조합 결성 이전에 입사를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단,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제재 사항


- 자조합 선정 후 결성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자진 철회 등으로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자진철회일 또는 1차 결성시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결성시한 연장 후 자진 철회 등으로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자진철회일 또는 연장된 결성 시한일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결성시한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취소로 인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선정 조합 중 출자확약서 등(LOC, LOI)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단,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을 완료한 경우 또는 모태펀드 출자승인액의 축소로 인해 출자 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출자사업 참여 제한 면제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자조합의 투자실적이 제출한 투자계획 대비 2년 연속 미달성한 조합의 운용사는 2년차 미달성 연도를 기준으로 차년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조기결성 가점을 신청하여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결성일이 해당 조기결성 협약일보다 늦어진 경우, 해당 기간만큼 관리보수 삭감 및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관리보수 삭감 세부 적용방법은 결성총회에서 정함
- 상기 제재사항은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출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Ⅲ.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접수	'26. 4. 27.(월) 10:00부터 '26. 5. 6.(수) 14:00까지	제안서 접수(온라인)	-
선정	'26.6월(예정)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 결성 완료	-

Ⅳ. 지원 방법 및 질의응답

구분	내 용
지원방법	<p>온라인 신청 매뉴얼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 * 온라인 접수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https://install.kvic.or.kr </div>
설명회	<p>- 일시 : 2026. 4. 3.(금) 15:00 - 장소 : 한국벤처투자 지하1층 스타트업 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 신청 : 참석 희망자는 2026. 4. 2.(목) 17시까지 아래 링크로 참가 신청 (https://forms.gle/ctTdm4S3qBxQ1C6A9)</p> 

* 출자사업 관련 질의응답은 '26.4.23.(목)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상기일정은 특이사항 발생 시 사전 안내하고 변경될 수 있음

Ⅴ.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선정결과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또는 이의에 대한 회신은 검토결과에 따라 유선 및 서면 등으로 진행

VI. 문의 방법

- 교육계정 관련 문의: 02-2156-2473, fof@kvic.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02-2156-2479, datacenter@kvic.or.kr

2026. 3. 23.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별첨 1-1>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약정액(신청 자조합 포함)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참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참여인력 수}) < 5,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별첨 1-2〉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대표펀드매니저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개인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5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 원

2.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 원

〈별첨2〉 평가항목

1차 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창업 지원	학생/교원 창업 및 창업 교육/지원 관련 실적 등
투자집행	운용사/운용인력의 투자 역량
사후관리, 밸류업	후속투자 유치 역량, 사후관리 역량
수익률	운용사/운용인력의 투자 회수(EXIT) 성과
액셀러레이팅	운용사의 액셀러레이팅 역량
가점 등	공고문 [Ⅱ.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2차 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창업 지원	학생/교원 창업지원 인프라, 지원 사업, 보육 시스템 및 보육 사례
펀드결성 가능성	출자자 적정성, 민간 출자자 모집 역량 등
투자역량	제안펀드 투자 전략 및 경험, 운용사 및 운용인력 투자실적 등
사후관리, 밸류업	사후관리 프로세스, 후속투자 유치 사례 및 역량, 밸류업 사례
수익률	수익 창출 사례, 회수 전략 등